[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-518호]

## 2025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

제조혁신을 통한 중소·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『2025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』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> 2024년 10월 0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

#### 1. 사업개요

### □ 사업목적

○ 중소·중견기업의 디지털 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공장, 로봇 및 공정자동화, 수준 확인, 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

#### < 2025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 >

세부	사업명	지원 과제수	<b>지원</b> 기간(개월)	<b>지원</b> <b>한도</b> (억)	지원금 비중(%)	사업 공고	신청 접수	평가 선정
	① 정부일반형	345	9	2.0				
	② 자율형공장	20	24	6.0				
스마트공장 구축	③ 디지털협업공장	6개 컨소시엄	12	10.0	50	′24.10	′24.10~12	′25.01~03
' -	④ 탄소중립형	20	9	2.0				
	⑤ 대중소 상생형	250	9	1.2	30	′25.03	′25.03~04	′25.05~06
	⑥ 부처협업형	150	9	2.0	50	′24.12	′25.01~02	′25.02~06
로봇	⑦ 제조로봇활용	100	8	2.5	F.0	′24.11	′24.11~12	′25.01~03
자동화	⑧ 제조기반기업	75	8	0.95	50			
⑨ 스마트공장	수준확인	2,000	-	0.01	100	′24.12	상시	상시
⑩ 클라우드형	클라우드화	5	9	2.7	F.0	/2.4.4.2	/25.04.02	/25.02.04
종합솔루션	종합솔루션화	1	12	8.3	50	′24.12	′25.01~02	′25.02~04
⑪ 공급기업 역	격량진단	950	-	0.01	80	′25.02	상시	상시
⑫ 제조DX	사전 기획	1,000	3	0.02	85~90	′24.07	상시	상시
멘토단	구축 지도	100	3	0.01	85	′25.01	상시	상시
활용지원	사후 관리	250	4	0.19	50	′25.01	′25.01~02	′25.03~04
③ 제조데이터 가공기업 F		미정	-	-	-	'24.12	′25.01~02	′25.02~03
⑭ 제조데이터	상품 가공지원	25	4	0.5	80	'25.03	′25.04~05	′25.05~06

- \* 지원 과제수는 정부(안) 기준이며, 향후 국회 등 심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
- \* 지원 기간.지원 한도.(정부)지원금 비중은 '최대'를 의미함

□ 신청 자격
○ 국내 중소·중견 기업
□ 신청 방법
○ 온라인(인터넷)을 통한 사업 신청
☞ 신청 방법 :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(smart-factory.kr) 접속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사업관리 → 과제신청 → 사업계획서 내용입력
※ 일부 신청 방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
□ 세부 사업별 공고 확인 방법
<ul> <li>사업별 공고 일정에 맞춰, 중기부홈페이지,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(smart-factory.kr)에서 확인</li> </ul>
□ 정부지원금
○ 총사업비의 30~100% 이내
※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 기준과 민간 부담 비율이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확인
□ 지원 제외 사항
<ul><li>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</li></ul>
< 부적격 사항 >
▷ 휴·폐업중인 기업       ▷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       ▷ 유흥·향락업, 숙박·음식점       ▷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      ▷ 개별 사업공고에서 '신청제한' 또는 '지원제외'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
□ 유의 사항
사업별 지원 규모 및 추진 일정 등 세부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공지될 개별 공고문('24.10월 이후)을 통해 반드시 확인 필요

#### 2. 사업별 지원계획

#### ① 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

#### □ 사업개요

- (사업 목적) 중소·중견기업의 제조 현장에 적합한 고도화 수준의 스마트공장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
- (지원 대상) 국내 중소·중견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한 제조기업

#### □ 지원 내용 및 조건

- 0 지원 내용
  - 정보통신기술(ICT)로 제품의 기획-설계-제조-판매 과정을 통합하여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
  - 제품설계·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되는 자동화 장비·제어기·센서 등 구축지원
- 지원 과제 : 345개 내외

#### ㅇ 지원조건

지원유형	지원 기간	지원 한도	지원 비율	구축목표 수준*
고도화	최대 9개월	최대 2억원	500/ OHII	중간1 이상
 고도화 (동일수준)	최대 6개월	최대 0.5억원	50% 이내	목표설정필수

- ※ 구축목표 수준은 KS X 9001-1(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) 표준 기준
- \* "고도화(동일수준)"은 과거 정부 지원사업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 수준과 올해 신규 신청할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동일한 경우 신청 가능(수준별 1회 지원 가능)
- \* 과거 정부 지원사업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계획 대비 **초과 달성**한 경우는 기존과 동일한 구축 수준으로 올해 신규 신청하더라도 **"고도화"** 신청이 가능
- \* **자체적으로**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'스마트공장수준확인사업'을 통해 수준확인을 받은 기업은 올해 신규 신청할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과거 자체적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과 동일하더라도 "고도화" 신청이 가능

#### ② 자율형공장 구축

#### □ 사업개요

- (사업 목적) AI·디지털트윈 기반 실시간 관제, 분석·예측 등 작업자 개입을 최소화하는 '자율형공장' 구축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향상
- (지원 대상) 국내 중소·중견 제조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수준(수준 확인 포함) '중간1' 이상으로 확인된 기업

#### □ 지원 내용 및 조건

- ㅇ 지원내용
  - (기획지원) 기업별 공정분석 및 실행전략 등 자율형공장 구축 기획 등
  - (구축지원) AI 및 디지털트윈을 적용하여 기상환경 기반 자율형공장 구축 등
- 지원 과제 : 20개 내외
- 지원 조건 : 총 사업비의 50%(6억원) 이내(최대 2년, 연 3억원 이내)

지원유형	지원 기간	지원 한도	지원 비율	구축목표 수준*
고도화	최대 2년	연 3억 (2년 6억)	50% 이내	중간1 이상

- \* 구축목표 수준은 KS X 9001-1(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) 표준 기준
- \*\* AI, DT(시뮬레이션 이상), AAS(제조데이터 표준) 적용 필수

### □ 유의 사항

- 도입기업은 1차 평가 후 기획기관 및 공급기업\* 매칭을 통해 컨소시엄으로
   최종 선정평가 대응
  - \* (기획기관) 기업 요구사항 및 공정분석, 맞춤형 전략수립 및 컨설팅 역량 보유기관(기업) (공급기업) AI 및 디지털트윈 기반 자율제어 구축역량 보유기업(협업체)
- 사업공고 시 기획기관 모집을 병행하고, 전략 수립 및 공급기업 매칭 등 도입기업을 지원

#### ③ 디지털 협업공장

#### □ 사업개요

- (사업 목적) 개별공장의 스마트화 지원을 넘어 스마트공장 간 데이터 기반의 상호 연결을 통해 시너지 창출 및 기업 간 연계성 강화
- (지원 대상) 중소·중견 제조기업(5개 이상)으로 구성된 컨소시엄

#### □ 지원 내용 및 조건

- ㅇ 지원 내용
  - (공동·협업 시스템 구축) 제품 개발·생산, 유통·물류 관리 등의 컨소시엄 간 연계 및 공동 활용이 가능한 스마트 시스템 구축
  - (개별 스마트공장 구축) 제품설계·생산공정 개선 등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이와 연동되는 자동화장비·제어기·센서 등 구축지원
- 이 지원 과제 : 6개 컨소시엄 내외
- 지원 조건 : 컨소시엄당 최대 10억(총사업비 50% 이내)

구분		지원 기간 및 지원 한도	정부 지원 비중
개별 스마트공장 +	고도화(동일수준)	최대 12개월, 0.5억 원	50% 이내
공동·협업 스마트시스템	고도화	최대 12개월, 2억 원	50% 이내

- \* 상기 지원 조건은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개별기업별 지원 규모임
- \* '동일수준'은 정부일반형과 동일 방식으로 운영

### □ 유의 사항

- 데이터 기반 협업을 위해 지식재산권(제조데이터 등) 및 영업비밀 등 참여기업 간 권리 의무와 역할 분담 등을 규정한 "상호협력 계약" 체결
- 사업 계획서 작성 시 스마트공장의 표준 연계 구성도, 범위 등 표준\* 적용 관련 내용 명시 \* IEC 62541(OPC 통합 아키텍처), IEC 63278(AAS)

### ④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

#### □ 사업개요

- (사업 목적) 중소·중견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탄소저감에 효과적인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통해 에너지 효율 향상과 저탄소 경영체계로의 전환 촉진
- (지원 대상) 국내 중소·중견기업 중 탄소중립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한 제조기업

### □ 지원 내용 및 조건

- 지원 내용
  - (탄소저감 스마트공장 구축) FEMS 구축과 고효율 설비개체 도입을 통한 에너지 효율향상 지원
  - (구축지도 컨설팅) 최종 선정기업 대상으로 전체 구축과정에 걸쳐 구축상황 코디네이팅, 변경사항 관리, 성과측정 등 전주기 지원
- 지원 과제 : 20개 내외
- 이 지원 조건

지원	원유형	지원 기간	지원 한도	지원 비율	구축목표 수준*
고도화	수준향상	최대 9개월	최대 2억원	50% 이내	중간1 이상
<b>元</b> 五 五	동일수준	최대 6개월	최대 0.5억원		목표설정필수

\* 구축목표 수준은 KS X 9001-1(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) 표준 기준

## □ 유의 사항

최적 에너지관리 및 탄소 저감을 위해 FEMS(공장 에너지관리 시스템)
 솔루션에 한정하여 지원 가능하고, MES(제조실행 시스템), SCM(공급망관리시스템)
 등 타 솔루션 구축지원 불가

#### ⑤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

#### □ 사업개요

- (사업 목적) 민간이 협업하면 정부가 함께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여 대·중소기업 동반성장 촉진
- (지원 대상) 국내 중소·중견 기업

### □ 주관기관 및 협업기관

- (주관기관) 중소·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이 가능한 대기업·중견기업·공공기관·민간기관 (협업기관과 컨소시엄 가능)
  - \* 주관기관의 현물출자 인정(주관기관 출연금의 20% 이내)
- (협업기관) 정부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고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 역량을 소유한 공공·민간기관

### □ 지원 내용 및 조건

- 지원 내용
  - 주관기관이 중소·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, 정부가 구축 비용의 30% 이내 지원
  - 주관기관이 협업기관과 컨소시엄을 이루어 참여하며, 협업기관에 한해 중소·중견기업 모집·선정 등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
    - \* 매칭된 정부지원금의 5% 이내 협업기관 운영비로 책정 가능
- 지원 과제 : 250개 내외
- 이 지원 조건

구분	지원 기간 및 지원 한도	정부 지원 비중
고도화 (동일수준)	최대 6개월, 0.3억 원	30% 이내
고도화	최대 9개월, 1.2억 원	30% 이내

\* '동일수준'은 수준 향상 없이(중간1→중간1, 중간2→중간2) 재신청하는 경우에 한함

#### ⑥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

#### □ 사업개요

- (사업 목적)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국가 전략산업 육성, 산업안전 등 현안 해결과 연계하여 스마트공장 구축지원
- (지원 대상) 국가 전략산업 육성 또는 산업안전 등 국민이 체감 할 수 있는 분야의 중소·중견 제조기업

#### □ 지원 내용 및 조건

- ㅇ 지원 내용
  - (중기부) 스마트공장 구축지원
  - (해당 부처) R&D · 인증·판로·컨설팅 등 기업지원 서비스를 추가 지원
- 지원 과제 : 150개 내외
- ㅇ 지원 조건

구분	지원 기간 및 지원 한도	정부 지원 비중
고도화(동일수준)	최대 6개월, 0.5억 원	50% 이내
고도화	최대 9개월, 2억 원	50% 이내

<sup>\* &#</sup>x27;동일수준'은 정부일반형과 동일 방식으로 운영

### □ 기타 사항

- 협업부처 추천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사업 운영기관 선정
  - \* 운영기관은 매칭된 정부지원금의 5% 이내를 운영비로 책정 가능
  - 정부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고, R&D·인증·판로·컨설팅 등 기업지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관

#### ⑦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

#### □ 사업개요

- (사업 목적)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제조경쟁력 강화와 로봇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조 현장에 로봇 자동화 시스템 도입 지원
- (지원 대상) 도입기업이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
  - (도입기업) 로봇 도입이 필요한 국내 중소·중견 제조관련 기업
  - (공급기업) 로봇 자동화 시스템 솔루션 보유 기업(로봇 SI기업)

#### □ 지워 내용 및 조건

○ 지원 내용 : 로봇 도입, 공정설계 컨설팅, 안전 검사 컨설팅 등 패키지 지원

○ 지원 과제 : 100개

이 지원 조건

구분	지원 기간 및 지원 한도	정부지원금 비중
로봇 도입	최대 8개월, 2.5억 원	50% 이내

### ⑧ 제조기반기업 공정자동화 지원

### □ 사업개요

- (사업 목적) 주조, 표면처리, 정밀가공 등 제조기반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수작업, 고노동 부하공정 등을 대상으로 공정자동화 지원
- (지원 대상) 공정자동화 구축이 필요한 국내 중소 제조기반기업
  - \* 주조, 금형, 용접 등 제조기반기업으로 업종코드(※개별 사업공고 참고)를 보유한 중소기업

### □ 지원 내용 및 조건

- 지원 내용 : 인력 의존도가 높은 공정을 대상으로 공정자동화 구축 지원 \* (지원제외) 단순 범용 공정장비·설비 구입·교체는 지원대상 제외
- 지원 과제 : 75개
- 이 지원 조건

구분	지원 기간 및 지원 한도	정부지원금 비중
공정자동화 구축	최대 8개월, 0.95억 원	50% 이내

#### ⑨ 스마트공장 수준확인

#### □ 사업개요

○ 중소·중견 제조기업의 자발적인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를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화 수준진단을 지원

#### □ 지원 내용

- ① 확인 기관 및 교육·심의기관
  - ㅇ 대상 기관
    - (확인 기관) 수준확인 사업 전반(수요 발굴·홍보, 수준확인 신청·접수, 수준확인 실시, 사후관리 등)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
    - (교육·심의기관) 수준확인 심사원 교육, 교육 프로그램 개발, 수준확인 심사 결과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
  - 0 지워내용
    - (확인 기관) 참여기업 모집·선정·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비·운영비 지원
    - (교육·심의기관) 수준확인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통합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·운영비 지원
- ② 수준확인 참여기업
  - ㅇ 지원 대상
    - 자체 역량으로 스마트공장 구축한 기업(정부 스마트공장지원사업 미참여)
    - 자발적으로 고도화를 추진하여 스마트화 수준 상승이 기대되는 기업
    -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기업
  - 지원 과제 : 2,000개 내외
  - 지원 내용 : 수준확인서 및 진단보고서 제공(수준확인 비용 전액지원)

#### ⑩ 클라우드형 종합 솔루션

#### □ 사업개요

- (사업 목적) 기업별 요구기능을 선택·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형 소프트웨어(SaaS) 및 패키지\* 형태의 종합솔루션 개발·실증 지원
  - \* 개별솔루션 간 데이터 연동을 통해 다양한 기능 제공, 제조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능 선택가능
- (지원 대상) 스마트공장 중소·중견 공급기업 컨소시엄
  - 클라우드화 : 스마트공장 공급·도입기업(실증) 컨소시엄(각 1개사)
  - 종합솔루션화 :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3개사 이상\* 컨소시엄
    - \*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3개사 중 최소 1개사 이상 중소 공급기업 참여 필수

#### □ 지원 내용 및 조건

- 0 지원 내용
  - (클라우드화) 중소 공급기업의 사업화 중인 구축형 제조솔루션을 클라우드형 제조솔루션(SaaS)으로 전환 및 도입기업 실증지원
  - (종합솔루션화) 사회·정책이슈\* 대응이 가능한 다수의 클라우드형 제조 솔루션(SaaS)을 연계·통합 하는 종합솔루션 개발·실증 지원
    - \* 탄소중립(CBAM, DPP), 중대재해 등의 국내외 사회 정책 이슈 등
- 지원 과제 : 클라우드화 5개, 종합솔루션화 1개
  - \* 클라우드 종합솔루션의 지원과제수는 '25년도 예산 확정에 따라 변동 가능
- 지원 조건 : 최대 50% 지원, 2.68억 원(클라우드화), 8.3억 원(종합솔루션화)
  - ※ 공급기업의 기존 개발인력, 보유 소스코드, 개발도구 활용, 개발환경 제공을 위하여 민간부담금의 최대 20%까지 현물 인정

### □ 유의 사항

솔루션 개발 완료 후 솔루션 목표업종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개발 솔루션을 실증하고 완성된 솔루션에 대한 사업화 필수(정부지원금 無)

#### ⑪ 궁급기업 역량진단

#### □ 사업개요

- (사업 목적) 공급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정보를 제공하여 자발적
   역량 강화 및 도입기업에게 양질의 스마트공장 구축 촉진
- (지원 대상) 국내 중소·중견 기업
- □ 지원 과제 : 기본 역량진단 900개, 심화 역량진단 50개(과제수 변동 가능)

#### □ 지원 내용

- (자가 역량진단) 공급기업이 자사의 역량을 스스로 진단하고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가 역량진단 기능 제공
- (전문 역량진단) 자사의 역량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을 원하는 기업은전문 진단원을 배정하여 기본 진단과 심화 진단 수행
  - (기본 역량진단) 공급기업 역량진단 모델 등을 기반으로 전문 진단원이 진단지표에 따라 진단 후 진단결과를 기업에 제공
  - (심화 역량진단) 단계별 기본 진단 후 분야별 세부 진단 및 개선 방향에 대한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에 제공

## □ 지원 조건

○ 기본·심화 역량진단 : 진단비용 80% 지원

대상	총 진단금	정부 지원금(80%)	기업 부담금(20%)
기본 역량진단	80만 원	64만 원	16만 원
심화 역량진단 (기본역량진단 완료 기업대상)	190만 원	152만 원	38만 원

### ⑫ 제조 DX멘토단 활용지원

#### □ 사업개요

- (사업 목적) 대기업 등 현장경험이 풍부한 제조혁신 전문가(DX멘토단)을 활용하여 스마트공장 기획·운영 지도 및 운영 애로사항 해결지원
- (지원 대상) 국내 중소·중견 기업

### □ 지원 내용 및 조건

- (지원 내용) 기업과 DX멘토단을 1:1 매칭하여 사업기획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주기 밀착지원
  - (사전 기획지원)
    - ▶ (사전 기획)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에 참여 희망기업에 대한 스마트공장 도입 전략 수립 컨설팅 지원(8회)
    - ▶ (구축지도) 선도형 스마트공장 선정기업 대상 구축지도(4회)
  - (사후관리) 부품수리·교체,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솔루션 활용률 제고를 위한 유지보수 지원
- 지원 과제 : 1,350개 내외
- 지원조건

구분		지원 기간 및 지원 한도	정부 지원 비중
사전 기획	사전 기획	최대 3개월, 238만 원	85%
지원	구축지도	최대 3개월, 119만 원	85%
사	후관리	최대 4개월, 1,900만 원	50%

#### ⑬ 제조데이터 상품 가공지원 가공기업 Pool 모집

#### □ 사업개요

- (사업 목적) 제조데이터 가공 능력을 보유한 가공기업 pool을 확보 하고, 제조기업 등에 제공하여 제조데이터 상품가공 지원 시 활용
- '제조데이터 상품 가공지원사업' 과제 선정 시, 데이터 보유기업과 매칭하여 데이터 가공, 활용 등의 업무 수행
- (지원 대상) 제조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기술, 인력 등 데이터 가공 서비스 지원체계를 보유한 기업 또는 기관
- □ 선정 규모 : OO개 사 (절대평가로 요건 적합 기업을 Pool에 등록)
  - \* 현재 기준, 총 129개 사 등록('24년 23개 사 신규 등록)

#### □ 수행 업무

- 중소 제조기업 내 축적된 제조데이터를 활용하여 AI·빅데이터 분석용 제조데이터 가공 및 품질검증 등 상품화 지원
  - (제조데이터 가공 및 상품 제작) 제조데이터의 전처리, AI 학습 모델 구축 등 제조데이터 상품 제작을 위한 가공 수행
  - (상품등록 지원) 가공지원을 통해 산출된 제조데이터 상품은 제조 데이터 거래소에 필수적으로 등록(최소 1년 이상)
  - (제조데이터 활용지원) 보유 제조데이터를 활용한 상품화 전략 등 제조기업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및 데이터 활용 개선방안 제언

#### 14 제조데이터 상품가공 지원

#### □ 사업개요

- (사업 목적) 제조데이터 상품화를 통해 중소 제조기업 현장에서 수집·저장된 제조데이터의 품질 향상 및 부가가치 증대 도모
- (지원 대상) 제조데이터를 수집 중인 국내 중소·중견 제조기업

□ 지원 과제 : 25개 내외

### □ 지원 내용 및 조건

- 중소 제조기업 내 축적된 제조데이터를 활용하여 AI·빅데이터 분석용 제조데이터 가공 및 품질검증 등을 통한 제조데이터 상품화 지원
  - (가공지원) 제조데이터의 개념화, 분석 및 분류, 전처리 등 빅데이터·AI 기반 제조데이터 가공 서비스 제공
  - (품질 검증지원) 제조데이터의 정확성 및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데이터 품질 검사 및 검증 프로세스 지원
  - (상품 등록지원) 산출된 제조데이터 상품의 제조데이터 거래시스템에 등록하기 위한 가격산정 및 거래시스템 등록지원
- 지원 조건 : 최대 4개월, 0.5억원(총사업비의 80% 이내) 지원

구분	지원 기간(최대)	지원 금액(최대)	정부 지원 비중	기업부담금 비중
제조데이터 상품 가공지원	4개월	0.5억원	80% 이내	20% 이상 (기업부담금의 10% 이상 현금부담)

## 3. 사업별 문의처

# □ 사업별 문의처

세부 사업명		중소벤처기업부	전문(운영) 기관	연락처
스마트공장 구축	① 정부일반형	제조혁신과	스마트 제조혁신추진단	지역별 접수 및 문의처 참조
	② 자율형공장			044-300-0956, 0960
	③ 디지털 협업공장			044-300-0953~4
	④ 탄소중립형			044-300-0956, 0960
	⑤ 대중소 상생형			044-300-0958
	⑥ 부처협업형			044-300-0959
로봇 자동화	⑦ 제조로봇활용		한국로봇 산업진흥원	053-210-9622~7
	⑧ 제조기반기업		국가뿌리산업 진흥센터	02-2183-1624
⑨ 스마트공장 수준확인			스마트 제조혁신추진단	044-300-0955, 0960
⑩ 클라우드형 종합솔루션				044-300-0972
⑪ 공급기업 역량진단				
① 제조DX 멘토단 활용지원				(사전) 044-300-0974 (사후) 044-300-0959
① 제조데이터 상품 가공지원 가공기업 Pool 모집				044-300-0941
⑭ 제조데이터 상품 가공지원				

- ※ 공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합니다.
- ·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: https://smart-factory.kr
- ·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: http://www.mss.go.kr
- ·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: "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" / http://pf.kakao.com/\_IIfqd
- ·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 : https://pms.kpic.re.kr

# □ 지역별 접수 및 문의처 (스마트제조혁신센터)

기 관 명	연 락 처	주 소	
서울	02-944-6032, 6036	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232	
부산	051-974-9155	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 1로 60번길 31	
대구	053-602-1812~3, 1864~5	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46-17	
경북	053-819-3055~9, 3046, 8156	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	
포항	054-223-2242	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	
광주	062-602-7218, 7211, 7214	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	
전남	061-729-2583	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4로 13	
제주	064-720-3039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	
경기	031-500-3100	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	
경기 북부*	031-539-5140	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	
인천	032-260-0621~4	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	
대전	042-930-4351	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	
충남	041-589-0715, 0719, 0705	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136	
세종	044-850-3821, 3823, 3826	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93	
울산	052-219-8646, 8910	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5	
강원	033-248-5682, 5697	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61-10	
충북	043-270-2813~4	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76	
전북	063-219-2272	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09	
 경남 	1811-8297	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북7길 21	

<sup>\*</sup>경기 북부지역: 파주시, 고양시, 포천시, 남양주시, 양주시, 구리시, 동두천시, 연천군, 가평군, 의정부시